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 관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 2.3 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허표를 개정하기 원한다면 언제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해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외교 공한을 통해 신속하게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그에 규정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그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 2.4 조 동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부속서 2-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이는 당사국이 다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가. 제 2.3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인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관세를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 또는 제 2.3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설정된 수준 중 더 낮은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 또는
-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이 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를 거치지 않으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한쪽 당사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다. 상업용 견본품 및 광고물¹, 그리고
-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¹ 정의 및 내용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규제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세관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국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 1 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 3 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국내법 및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8. 제 8 장(서비스 무역) 및 제 9 장(투자)을 조건으로

-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도 자국 영역을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²
- 나.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다.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 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속도로 및 철로의 안전 또는 안보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당사국이 통관항구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장소에서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가 나가는 것이 가능한 항구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7 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 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WTO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함을 양해한다.

-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8 조와 「반덤핑 협정」 제 8.1 조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 6 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3. 당사국이 자국의 WTO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4. 당사국이 자국의 WTO 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설정,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5 항은 당사국이 제 5 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기관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7. 제 5 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 2.9 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³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30 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 1) 「수입허가협정」 제 5 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 일 전에 그렇게 한다.

³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제 2.10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상의 의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제 2.11 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2.12 조 관세율할당 운영 및 이행

- 부록 2-가-1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수립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주해, 수입허가협정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 조치 및 이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차별을 유발하기 위해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관세율할당 체계를 통한 수입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도록 보장한다.

제5절 일반 및 제도 규정

제2.13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포함하는 1994년도 GATT에 따라 그 당사국은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의 채택에 대해,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즉시 협의한다.

제 2.14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 나. 양 당사국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을 다루고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 다.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항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
 - 1)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그러한 개정과 부속서 2-가, 또는
 - 2) 부속서 2-가와 국가상품분류체계
 -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리고
 - 마.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라)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하는 것

제6절 정의

제 2.1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또는
-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이 수출될 것
- 나.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이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 다.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인이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 라.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인이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이는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선택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 양허표 제1절의 단계별 양허유형 “Y-1”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완전히 철폐된다.
- 나. 당사국 양허표 제1절의 단계별 양허유형 “Y-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로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당사국 양허표 제1절의 단계별 양허유형 “Y-5”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로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당사국 양허표 제1절의 단계별 양허유형 “Y-7”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로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당사국 양허표 제1절의 단계별 양허유형 “Y-8”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로부터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바. 당사국 양허표 제1절의 단계별 양허유형 “Y-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사. 당사국 양허표 제1절의 단계별 양허유형 “Y-15”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로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아. 당사국 양허표 제1절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2.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 제2절에 위치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제2절의 그 연도에 규정된 관세율에 따른다.

3.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 관세율은 다음을 반영한다.
 - 가. 제 1 절에 관해서는, 2012년 1월 1일에 유효한 각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과 2012년 1월 1일에 유효한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자국의 특혜 관세율 중 낮은 것, 그리고
 - 나. 제 2 절에 관해서는, 2015년 1월 1일의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적용 관세율
4.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1년차라 함은 제17.8조(발효)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제1항의 나호, 다호, 라호, 마호, 바호 및 사호에 따른 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 동일 상품에 대한 관세와 다른 경우, 더 낮은 관세가 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적용된다.
9. 양 당사국은 통일 상품명 부호체계의 전환이 이 부속서 상 양허관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일반 주해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1. 대한민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 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 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 1 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S-1, B-1, C 및 R을 포함한다.

- (a) 단계별 양허유형 “S-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 (b) 단계별 양허유형 “B-1”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적용 최혜국 실행 관세율⁴의 2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한다.⁵
- (c)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적용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한다.⁶ 그리고
- (d) 단계별 양허유형 “R”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⁴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적용 최혜국 실행 관세율” 이란 2005년 1월 1일 기준 대한민국의 적용 세율을 의미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기준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기준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베트남 관세양허표

1. 베트남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VN”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NV 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V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VN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V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 1 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S-2, S-3, A 및 B-2를 포함한다.

- (a) 단계별 양허유형 “S-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 (b) 단계별 양허유형 “S-3”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 2017년 1월 1일까지 20퍼센트로 인하되며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인하된 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 (c)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50퍼센트로 이하로 인하한다. 그리고
- (d) 단계별 양허유형 “B-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적용 최혜국 실행 관세율⁷의 20퍼센트 이상으로 인하한다.⁸

⁷ “동남아시아국가연합-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적용 최혜국 관세율” 이란 2005년 1월 1일 기준 베트남의 적용 세율을 의미한다.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기준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부록 2-가-1

대한민국의 관세율 할당 운영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한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대한민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베트남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베트남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나호에 기술된 베트남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 연도 | 물량 (메트릭톤) |
|----|--------------|
| 1 | 10,000 |
| 2 | 11,000 |
| 3 | 12,100 |
| 4 | 13,310 |
| 5 | 14,641 |
| 6 | 15,000 |

6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6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1항 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그리고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306161090, 0306169090, 0306171090, 0306179090, 0306261000, 0306271000 및 1605219000.